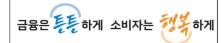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2.7.13.(수) 조간	배포	2022.7.12.(화)			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	책임자	팀 장	김재흥	(02-3145-8129)	
		담당자	조사역	이상선	(02-3145-8526)	

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

주요 내용

- □ '21년 중 **1,025,965건***의 불법금융광고를 **적발·수집**(전년대비 29.1% 증가)
 - *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: 711,144건(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,780건)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: 314,821건
- 적발·수집건 중 관련법규 위반·중복제보 여부 등 확인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9,877건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16,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
- □ 최근 ¹ 3공기관·대형은행 등 **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** 또는 ²인터넷카페 등에서 **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**하거나, ³ 개인신용정보 및 **통장매매** 목적 등의 **불법금융광고**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I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현황

● 불법금융광고 적발·수집 현황

- □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,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, 한국 인터넷진흥원(KISA)*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
 - * 유관기관간 공조의 일환으로 '20.8월부터 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정보 공유



- □ '21년 시민감시단 제보,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·수집된 불법금융광고*는1,025,965건으로 전년(794,744건) 대비 29.1% 증가(231,221건↑)
 - * 불법대부, 개인신용정보 매매,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, 신용카드 현금화, 작업대출, 통장매매
- □ 이는 '21년 중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('20.8월~12월 중 : 86,746건 → '21.1월~12월 중 : 563,748건)한데 주로 기인
 - 한편, **코로나19 장기화**에 따른 시민감시단(오프라인) 및 일반제보 활동 위축,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**시민감시단**· **일반제보** 및 **감시시스템**의 적발·수집건수는 **감소**

제보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적발・수집 현황

(단위: 건, %)

구 분	′19년		′20년(A)		′21년(B)		증감(B-A)	
ТЕ		비중		비중		비중		증감율
불법금융광고 수집건수	271,517	100	794,744	100	1,025,965 [*]	100	+231,221	+29.1
❶ 시민감시단 제보	249,145	91.8	187,785	23.6	170,788	16.6	△16,997	△9.1
❷ 일반 제보	22,372	8.2	17,316	2.2	13,679	1.3	△3,637	△21.0
❸ 감시시스템	-	-	502,897	63.3	277,750	27.1	△225,147	△44.8
4 KISA	_	-	86,746	10.9	563,748	55.0	+477,002	+549.9

*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 대상 : 711,144건(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,780건)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의뢰 대상 : 314,821건

2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

- □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**전화번호 이용중지** 또는 **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**를 의뢰
 - [전화번호 이용중지] '21년 중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9,877건*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
 - * ♥불법대부광고 관련 19,862건, ❷통장매매광고 관련 15건
 -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(11,305건) 대비 **8,572건 증가**(75.8%↑)
 - 매체별로는 **문자메시지**(11,941건)가 가장 많고, **전단지**(7,247건), **팩스**(477건), **인터넷·SNS**(212건) 順

- **코로나19** 사태 관련 **대면활동 위축** 등으로 주요 **광고수단**이 오프라인에서 **온라인**으로 **이동**하면서, **전단지 및 팩스 광고**의 경우 전년(8,675건, 700건) 대비 **감소**(16.5%↓, 31.9%↓)한 반면, **문자메시지**의 경우 전년(1,459건) 대비 **급증**(718.4%↑)

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

(단위: 건, %)

구 분	'19년		'20년(A)		'21년(B)		증감(B-A)	
TE		비중		비중		비중		증감율
전화번호 이용중지	13,709	100	11,305	100	19,877	100	+8,572	+75.8
● 전단지	11,054	80.6	8,675	76.7	7,247	36.5	△1,428	△16.5
❷ 팩스	1,032	7.5	700	6.2	477	2.4	△223	△31.9
❸ 문자메시지	1,058	7.7	1,459	12.9	11,941	60.0	+10,482	+718.4
④ 인터넷, SNS 등	565	4.2	471	4.2	212	1.1	△259	△55.0

- ※ 중복 제보접수, 조치의뢰 前 전화해지(결번) 등으로 인해 불법금융광고 적발·수집 건수와 조치의뢰 건수 간에 차이 발생
- [게시글 차단 등] '21년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6,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
 - **감시시스템 정교화**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**조치의뢰 건수**가 큰 폭으로 **증가**(10,641건 → 16,092건, 51.2%↑)
 - 유형별로는 불법대부(8,951건), 개인신용정보 매매(2,707건),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(1,923건), 신용카드 현금화(976건) 順

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현황

(단위: 건, %)

구 분	'19년		'20년(A)		'21년(B)		증감(B-A)	
TE		비중		비중		비중		증감율
조치의뢰 건수	16,356	100	10,641	100	16,092	100	+5,451	+51.2
● 불법대부	8,010	49.0	5,225	49.1	8,951	55.6	+3,726	+71.3
❷ 개인신용정보 매매	838	5.1	1,176	11.1	2,707	16.8	+1,531	+130.2
❸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	2,367	14.5	1,270	11.9	1,923	12.0	+653	+51.4
4 신용카드 현금화	2,036	12.4	1,258	11.8	976	6.1	△282	△22.4
⑤ 통장매매	828	5.1	534	5.0	922	5.7	+388	+72.7
_	2,277	13.9	1,178	11.1	613	3.8	△565	△48.0

Ⅱ 불법금융광고 주요 특징

● 정부·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

- □ 정부, 공공기관, 대형 시중은행 등 **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**하여 대출 상담을 **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**
 - 해당 광고는 정부의 **공공지원자금**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되어 있는 **정식**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
 - '서민 긴급지원' 또는 '근로·소득 연계형 대출승인'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
 - '방역지원금 긴급지원', '신용보증재단 보증'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
- □ 소비자와 상담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**미등록 대부업자**의 **불법 고금리**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*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
 - * 이외에도 ¹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, ² 중개수수료 편취, ¹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도 악용하는 사례 발생

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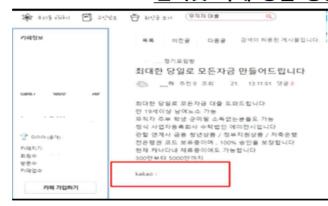
- 제목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
-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문구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 악용
- 실제 공공자금 등 지원 모집 내용으로 오인 하도록 지원기관 범위, 필요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

2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 유도

□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 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

-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**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**으로,
- **미등록 대부업자**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**추가피해**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

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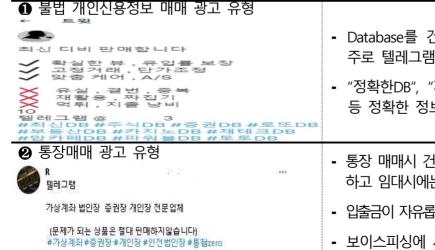


- 회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불법대부 상담 관련 광고 게재
- 게시글 하단에 카카오톡ID 등을 게시하여 1:1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
- 게시글에 정부지원상품,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
- 직장인,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주부,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

❸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

- □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증가
- 이런 과정으로 **불법금융업자**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**보이스피싱** 및 **불법사금융** 등에 **악용**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**추가적 피해**를 **유발**

불법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광고 유형



#법인통장삽니다#법인통장#법인장#법인장삽니다#법인장팝니다

- Database를 건당 10~50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담 후 거래
- "정확한DB", "짜깁기X", "유사투자자문업 경력"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유인
- 통장 매매시 건당 10~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하고 임대시에는 월별 임대료 지급 등을 약속
- 입출금이 자유롭고 송금한도가 클수록 고액으로 거래
-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

Ⅲ 불법금융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

☑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, 문자메시지, 팩스를 이용한 대부(대출)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

- 할 전화나 문자메시지, 팩스를 이용한 대부(대출)광고의 경우 정부, 공공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
- □ 이러한 불법대부(대출)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,
 -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,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
- ※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

☑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하세요

- ☆ 전화, 문자메시지 외에도 인터넷 카페, SNS 등 특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법대부(대출)상담을 유도
 - 특히, 카카오톡ID, 텔레그램 ID 등 **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**를 통해 **1:1** 상담이 이루어져 **추가피해**를 **유발**
- □ 회사명,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 - 금융감독원 '파인' 홈페이지(fine.fss.or.kr)에서 '제도권 금융회사' 또는 '등록대부업자'인지 꼭 확인
 -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**피해가 발생한 경우** 1:1 상담내역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, 경찰 등에 **신고***
 - * www.fss.or.kr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(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

☑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,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세요

- 학 대출 진행시에는 금융감독원 '파인' 홈페이지(fine.fss.or.kr)에서 '제도권 금융회사' 또는 '등록대부업자'인지 반드시 확인
- □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제도권 금융회사,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
 -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대출은 받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**대출성 상품모집인** 조회 서비스(www.loanconsultant.or.kr)에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

☑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(최고금리 초과, 불법채권 추심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」을 이용하세요

- 할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」를 이용할 수 있음
- □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**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*(☎**1332) 또는 **대한법률구조공단(☎**132)를 통해 신청 가능(<붙임2> 참조)
 - * www.fss.or.kr \rightarrow 민원·신고 \rightarrow 불법금융신고센터 \rightarrow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

☑ 법정 최고 이자율'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,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

- ⋆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%이며, '21.7.6.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24%를 적용
- ☞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, 실제 선이자,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
- □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,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*
 - * 단.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
 - 연 이자는 관련법상 20%('21.7.6. 이전 계약건은 연 24%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워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

☑ 내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

- 할 불법금융광고를 '클릭'하기 전에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적지워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
- □ 파인(fine.fss.or.kr)의 '서민금융1332(www.fss.or.kr/\$1332/)' 클릭하여 '서민 금융지원' 탭에서 생활안정자금,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음
 - 또한, 서민금융진홍원(www.kinfa.or.kr, ☎1397)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할 수 있음

☑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, 지자체, 경찰, 한국인터넷진흥원(불법스팸) 등에 신고하세요

- 할 온·오프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·지자체· 경찰, 한국인터넷진홍원(불법스팸) 등에 신속히 신고*
 - * (금감원)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(<붙임3> 참조) (한국인터넷진흥원) 불법스팸신고센터(spam.kisa.or.kr) → 불법스팸 → 스팸신고

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

유형1 불법대부광고(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광고)

광고행태

- ☑ 무직자, 대학생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 가능한 것으로 광고
 -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·변조하여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



- □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상식을 벗어난 문구(누구나 대출 등) 또는 은어('급한불', '월변' 등) 등을 사용하며, 이는 불법고금리 등 대출사기,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
 -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**피해**(최고금리 초과, 불법채권 채심)가 **발생**한 경우 「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」을 활용*
 - 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\rightarrow 민원·신고 \rightarrow 불법금융신고센터 \rightarrow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
- □ 또한, 대출의 **중개·알선**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**자금을 직접 수취**하는 것은 **불법**

유형2 불법대부광고(사칭문자)

광고행태

- ☑ '새정책 특별지원금', '신용보증재단 보증'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상 공인 등을 유인
 - 실제 공공자금 등 지원 모집내용으로 오인하도록 지원기관 범위, 필요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

사칭문자 사례 [새정책 특별지원급 안내] [Web발신] (광고)경영위기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,직장인 등 급용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정책자급 이용자 역시 추가신청이 가능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마감 전 빠른 신청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[미 취급안내 -취급기관 : 본인 신분증 외(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개별 안내) 신청기간: 22년 5월 25일(수) 18시까지 *서류 누락시 지원기한 내에 보완이 가능하며, 기한이 결과시 대출 신청 철회 됩니다. [미 자격대상 -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내국인 -직장인,일용적,주부,사업자,프리펜서

♀소비자 유의사항

- □ 정부, 금융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*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
 - *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
- □ 불법업자 등과 상담으로 인해 **개인정보 등 유출**이 **예상**되는 경우 파인(fine.fss.or.kr)*을 통해 '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**'을 활용
 - * 파인(fine.fss.or.kr) → 소비자보호 → 개인정보노출 등록·해제
 - **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(신규계좌 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)가 제한됨

유형3 작업대출(문서위조를 통한 대출)

광고행태

- ☑ 무직자,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 [®] 증명서,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(위·변조) 하여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
 - "1~8등급 가능", "작대(작업대출의 줄임말)", "신불자 대출"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



☆소비자 유의사항

- □ 재직증명서,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하여 위·변조된 자료를 금융 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*을 받을 수 있으므로 **각별히 주의**할 필요
 - * (사기)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(공문서 등의 위·변조 및 행사) 10년 이하의 징역 (사문서 등의 위·변조 및 행사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유형4 통장 등의 매매

광고행태

- ☑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등 통장,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
 - 매매의 경우 건당 10~200만원까지 다양 하게 지급 가능하고,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



교소비자 유의사항

- □ 통장 등 매매의 경우 보이스피싱, 자금세탁 등 **각종 범죄행위**에 **활용**되어 **추가적인 피해**를 **유발**할 수 있으며,
-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*임을 유의
 - *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사이어변합店店有效的確定

- 산용하도짜면 방법으라 산2 - 오시학자자와 지택산2

전기통신라유사기 이외계의 신고

- 지속은행위회해위 선고

- 중요한국회가에선지

- 4554H 584H

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

① 제도권 금융회사,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

√ 파인(fine.fss.or.kr)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'파인'을 검색하여 접속 ☞ '제도권 금융회사 조회' 또는 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를 클릭하여 확인 ●파 인 인기랭킹 순위 2 금융상품 만눈에 · 중보영상 등 파인 서비스 소개 BESTA O I'm Fine 금융꿀팁 은행 - 카드 Thank you 내계좌한눈에 ■
 채권자변동조회
 신용정보조회
 신용상당 ■ 자동이체통합관리 카드포인트조회 외환경합이 금융기례계산기 금융소비자 뉴스 [뉴스레터] 당봉소비자 뉴스레터 22-21호 (개한전 개합시 개합화)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통합연금포털 생활금융통통 CBS21 (+) 퇴적언금비교공시 원리금보장언금상품 (0) 宁 28 퇴직연금맞춤형수수료비교 금융권 채용정보 F1927 @ 서민·중소기업 소비자보호 금융회사 PF-191332 알림창 중소기업·자양업자금융지원 전-월세자금인내 e님용민원센터 금용교육센터 IOISIAISIE SIO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22년도 판테크 현장자문단 서민급용진흥원맞춤대회 즉시인금 분쟁조정신청인내 및 아막도 지미스 제계 안내 [위임시] 2022시되(함) 문내용] 공용규제(나부동제동 1 1 1 1 2 참 방법] 온라인신청 배우기기 **및 자문 서비스 재개 안내** 금융소비지의소리 긍용통계정보시스템 BEET OF XIVABILATE MAN SON · HEARTHEADAY REPROPER A 0000001 A ... POT 25 0 17 중소기업 직접금융 종합지원 🗖 (8) (B) (3) (Q) (w)

②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

√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로 접속 후 '민원·신고' → '불법금융 신고센터' → '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' 민원-신교 참여-소등 금용통계 금융소비자보호 = 9 증용감독일 급감원소개 민원-신고 < 0 제도안내 BIR-NZ e-PROMETER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성숙한 공용기를 포함 = 불렀사금을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번호사를 제부자 대리턴 및 소송대리언으로 선당되 작은 소송대리 및 법률성당 서비스를 시중했는 제도입니다. **単型品を公司を**目 - DEVICE - 보험모임에서 하면산고 지원조건 - 無知時間高限から経期開刊区 O 지원대상 · 프로젝트를 대부인하십부터 임원 최고관리 조권 대출을 받았거나 불업조선 회복 도오로 회복을 보는 모든 - 無数知用内容的之

보호에거나 존재하지 않는 제원을 추십하는 경
 변복적으로 전혀 보는 추가지에 발표하는 경우

O BY ARMSTONS PERC THEN

※ 강선을 자용하여 전체자급 마련을 강당하는 행위

제안되면 및 확산진행자에게 추십하는 경우
 범석별자의 진행사설을 개보으로 안내하는 경우

HC 마인(지역 9시-마침 8시)의 전략 또는 정도하는 경우 (ID 가족 관계인 등 및 3위에게 해보시원을 고지하는 경우

아래와 같은 행위는

불법금융광고 신고 방법

① 불법대부광고(명합광고, 문자메시지 광고)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

√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(www.fss.or.kr/s1332)으로 접속 후 '불법금융대응' → '제보신고' → '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' * 명함광고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 등 증빙자료 필요 급용감독원서민금융 1332 검색어를 입력하세요. Q fysh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ㆍ신용 사회적금융 불법금융대응 제보신고 금융감독원은 고급리, 불법 채권주심,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」를 운영 중입니다. - 전화상담: 국번없이 1332 - 대방상당: 본천 1층 금융민원센터, 지원 - 채팅상담: 장애 중중절환 등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분들의 피해 상담 . 제보신고 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용요령 체팅 바로가기 이자계산기 부번대보관고 저하버경 시고 Ψ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변호 이용증지 및 필요 시 수사협조를 위하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변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바로가기

②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



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 신고 방법

- ① (유선) 국번없이 1332(금융감독원)를 누르고 3번(사금융신고센터 연결)
- ② (온라인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만원·신고) '불법금융 신고센터' 내 "불법사금융·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"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에 접속 가능



③ (채팅) 서민금융 1332(www.fss.or.kr/s1332) '불법금융대응' 내 '제보신고'

